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와 울타리 또는 구조물 간의 간격을 축소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경사로의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며, 자전거 경사로 외에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완전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가. 관계 법령·새규정 등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2.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자치부령 제110호

국토교통부령 제395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의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로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0.09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는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전거 경사로의 중심(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중심)까지의 간격(이하 “경사로설치간격”이라 한다)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는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첩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표 1**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대 폭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제19조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제17조(안전시설 등) ① ~ ③ (생략)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에는 흙의 중심)까지의 간격(이하 “경사로설치간격”이라 한다)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첩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시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대 폭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대 폭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제19조(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